

#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

## 계약의 목적

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~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,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계약대상

장기요양등급을 득한 수급자 및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아래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

의거하여 방문요양/방문목욕 급여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.

-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
- ② 저소득 어르신
- ③ 독거 어르신
- ④ 일반 어르신

## 계약기간

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, 등급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. 단,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## 계약목적

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(정서적지지 및 지원강화)과 가족의 어르신 보호기능 보강과 보호자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, 소명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.

## 계약내용

계약당사자, 계약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, 비용, 비급여 대상, 대상별 항목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.

##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

이용료의 기준은 각 당해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.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요양급여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일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%  |
| 기초수급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%   |
|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(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피부양자를 포함한다)<br>보험료 순위25% 초과 보험료순의 50%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%   |
|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보험료액(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)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및 가입자수별(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피부양자를 포함한다)<br>보험료 순위가 0~25%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. | 6%   |

①요양급여 월 한도액은 매 당해연도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)에 따른다.

## ②월 이용료(2023년 기준)

| 구분      | 1등급       | 2등급       | 3등급       | 4등급       | 5등급       | 인지지원등급 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월한도액(원) | 1,885,000 | 1,690,000 | 1,417,200 | 1,306,200 | 1,121,100 | 624,600 |

\*\*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.

## ○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표

| 분류         | 30분    | 60분    | 90분    | 120분   | 150분   | 180분   | 210분  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방문요양       | 16,190 | 23,480 | 31,650 | 40,280 | 46,970 | 52,880 | 58,930 |
| 본인부담금(6%)  | 971    | 1,408  | 1,899  | 2,416  | 2,818  | 3,172  | 3,535  |
| 본인부담금(9%)  | 1,457  | 2,113  | 2,848  | 3,625  | 4,227  | 4,759  | 5,303  |
| 본인부담금(15%) | 2,429  | 3,522  | 4,748  | 6,042  | 7,046  | 7,932  | 8,840  |

## ③본인부담금

- 일반이용자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
- 경감대상자: 9%~6%
- 기초생활수급권자: 무료

## ④그밖의 이용부담액

-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%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.
-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.

## ⑤구비서류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(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)
-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(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)
- 주민등록증 사본 1부

## 계약의 해지

1)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구두 및 전화로 통보하도록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했을 때
- 타 기관과 이중 등록 했을 때
-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
-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. 단,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제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2)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며,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제하고,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실시할 수 있다.

##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

신원인수 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
### ①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대리인)의 권리

1. 입소이용계약서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
2.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
3. 입소이용계약서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출,조퇴에 관한 권리
4.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5.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6.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7.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8.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9. 시설의 협약,연계병원 외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## ②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대리인)의 의무

1. 이용자의 건강,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2. 본인일부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
3.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통보 의무
5.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소퇴소 절차,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
6. 이용자의 책무로 발생한 시설설비 및 집기비품 등의 파손, 멸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